

충청북도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3. 3. 8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제안이유

'91. 5. 31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46조2가 삭제되고 법 66조의
2가 신설됨에 따른 자구수정

주요골자

자구수정(법제46조의2의 → 법제66조의2의)

첨 부

1. 충청북도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충청북도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제7항중 “법 제46조의2의”를 “법 제66조의 2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